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분쟁조정 대상 정비〉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98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이후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경우를 조정신청 각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5(조정 등) ①·② (생략)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 2. (생략)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u><단서 신설></u>	제24조의5(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3. ----- ----- ----- - <u>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⑥ <u>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u>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조정절차</u>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 ----- ----- ----- ----- ----- ----- -----.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생략)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u>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u>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 ----- ----- -----

현행	개정안
⑤ (생략)	-----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 이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처분결과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가 상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 다만, 현행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결과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처분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이 불가하여 피해업체가 관련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 따라서 개정안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업체가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조정 각하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
각됨.

문 의 처
02)6788-5109

※ 참고: 유사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u>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u>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 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u>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u>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u>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u>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18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

<u>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 사항에</u>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